화재보험관련 보험사기 현황 및 효율적 대처방안

글 장상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보험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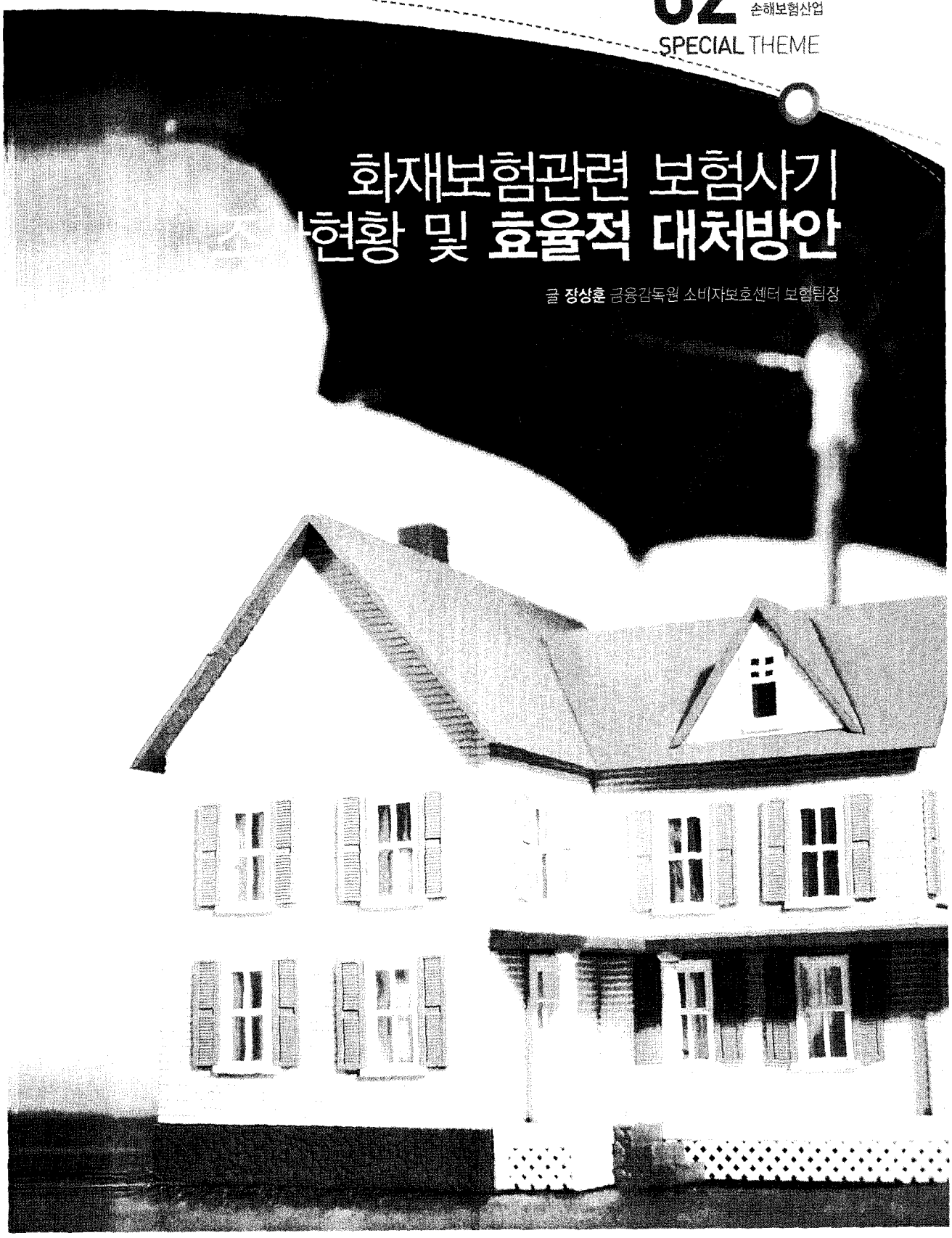

1. 머리말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2009년 5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사이에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향후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 결과이다.

강호순 사건을 보면, 강호순이 최초로 보험사기란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도 최초 자동차화재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고, 체포된 계기 역시 본인의 자동차 두 대에 대한 방화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연쇄살인범이 되기 전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본인의 식당을 방화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장모와 부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빌라를 방화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빈번한 방화가 결국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당국에서는 방화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70%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독일의 학자 그래스버거(R.Grassberger)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심각한 경제공황이 닥치자 화재보험사기가 방화범죄의 80~90%를 점하였으나, 경제가 안정된 1960년대에는 방화의 20~25%만 점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도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보험사기가 주요한 방화 동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한다.

작년 국제금융의 위기로 출발한 세계경제의 위기가 현재 해소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불황에 대비하여 시설투자를 보류하고 현금비중을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방화로 인한 보험사기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 간략하나마 화재보험관련 보험사기 조사현황과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2. 화재보험 및 관련 조사기관 현황

가. 화재보험 영업 현황

작년 말 기준 전체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을 살펴보면, 화재보험부문에 들어오는 수입보험료는 0.8%에 불과하다.〈표 1 참조〉 이는 장기보험계약에 포함된 화재보험 관련 특약을 제외한 수치이지만, 너무 미미해서 손해보험사 경영진의 관심은 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영업 확대와 손해율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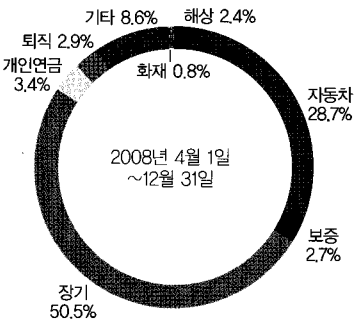

〈표 1〉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자료 : 보험개발원)

작년 말 기준 전체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은 39.4%로 모든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양호한 손해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더욱이 화재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재보험과 연결되어 있어 아무리 고액의 보험금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회사의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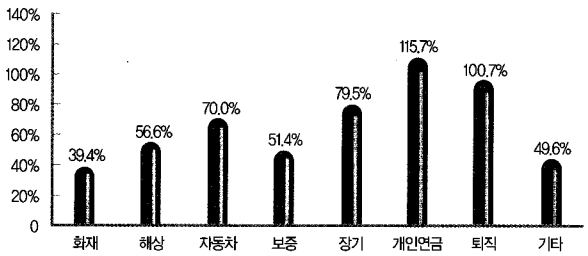

〈표 2〉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2008년 4월 1일~12월 31일, 자료 : 보험개발원)

이런 점들은 사실 화재보험사기 조사시스템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다.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이

나 최근 들어 손해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개인장기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의 특별조사팀과 별도로 장기보험 사기조사를 위한 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손해보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화재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설치한 회사가 없고, 기존의 특별조사팀에도 화재보험담당 조사 직원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나. 낮은 손해사정 수수료

현재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관련 손해사정은 거의 외주형태로, 연초에 보험사와 계약된 손해사정회사들이 일차적인 현장조사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방화나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화재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면책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많은 손해사정회사들이 방화여부 조사 또는 화재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기조사에 전력을 쏟았다. 그러나 수년 전 금융감독당국 등에서 규제완화 조치로 손해보험사와 손해사정회사 간의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철폐하였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 손해보험사들은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으로 손해사정회사의 수수료 등을 기존보다 20% 이상씩 삭감하여 지급하고 방화로 인한 면책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삭감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과거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있는 우수한 손해사정회사보다는 단순히 자사출신 직원이 퇴직하여 만든 회사나, 손해사정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회사만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손해사정회사들은 과거처럼 시간과 인적요소를 많이 투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사기 적발보다는 낮은 수임 단가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단순한 조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사별로 화재보험금 면책 발생 건수 및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해 본다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 공적 조사기관의 낮은 관심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서,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는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가? 방화여부에 대한 국가조사기관의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강호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화재조사관이 방화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면책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과거 소방서나 경찰서의 화재현장조사 시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미상의 화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방화의 고의성 입증여부를 고스란히 떠맡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회사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방화여부를 재조사 해달라는 ㄱ소나 진정 등을 남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라. 사법부의 변화

최근 의미 있는 화재보험금 관련 민사재판 결과가 여러 건이 나오고 있다.

일산에 소재한 모 커튼생산업체가 곧 철거될 예정인 공장을 대상으로 3곳의 손해보험사에 다수의 동산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불과 며칠만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보험금 청구액은 8억여 원으로 정황상 보험사기로 인한 방화혐의가 높아 고양지청에서 기소하였으나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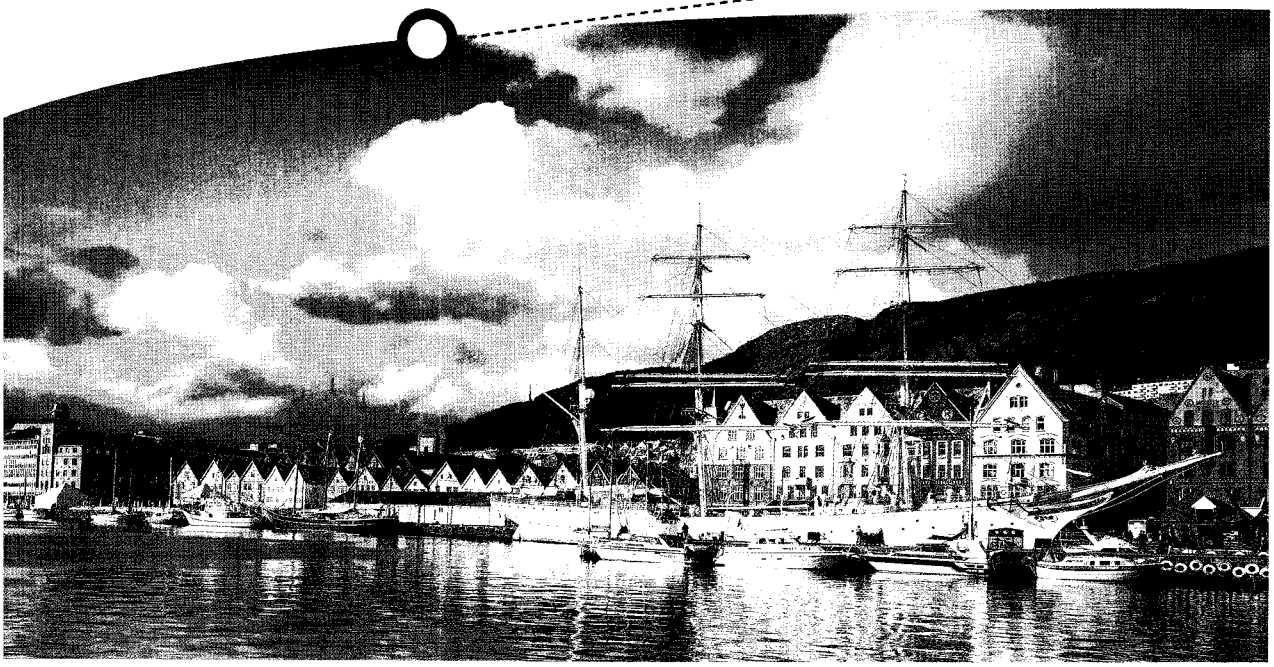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 이후 민사상 보험금청구소송에서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손해보험사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방의 한 섬유업체가 대략 20억 원 정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데 대해 보험사가 방화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민사재판에서는 보험사가 최종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유사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면, 최근 사법부의 경향이 인위적 착화로 인한 화재가 확실하고 보험가입 경위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류 등이 허위 내지는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경우 피보험자를 보호해야 할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나 여겨진다.

과거 미국의 OJ 심슨이 형사재판에서는 살인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는 살인혐의를 전제로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도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별도의 판단을 구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여겨진다.

가. 소방당국과 보험업계의 다양한 교류 필요

과거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관의 애로사항 중,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가 제일 궁금하다고 한 적이 있다.

사실 화재원인을 조사하면서 해당 건물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나 과거 화재보험금 수령여부 등은 상당히 중요한 기초 조사 자료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면 협조가 늦거나 아예 무응답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일선 손해사정회사 조사담당자의 애로사항 중에는, 소방서 직원들이 손해사정회사 직원들의 화재현장 출입을 제한하고 조사보고서 등의 열람을 제한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가 지연된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3년 전부터 소방당국과 손해보험협회가 매년 합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예산부족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손해보험협회가 어렵다면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라도 소방서 및 손해보험업계 화재조사 직원들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신뢰 구축 도모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나. 공신력 있는 화재원인 조사기구 설립 필요

사실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의 화재조사 또는 감식요원과 면담해 보면, 화재보험금과 관련한 사건 조사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많은 민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시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들의 증언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될 경우, 대부분의 피보험자들이 해당직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보호방안이 있기 전까지는 화재보험사기와 관련되어 시달린 적이 있는 조사관의 경우, 다음 화재조사에서는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연구실을 설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방화 여부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게 하여 향후 민 · 형사상 소송과정에 적극 대응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내에 화재조사LAB이 신설된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 우수한 손해사정업체 및 조사 직원 양성

손해보험사들도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할 때, 연고주의나 지나친 저가 중심에서 벗어나 과거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많은 우수업체를 우대하여 조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인력도 지나친 전직 경찰관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퇴직한 소방관 중 방화조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화재현장에서 손해사정업체를 지도하게 하는 것도 부실조사를 예방하는 방안이다.

4. 맺음말

손해보험사의 명칭 대부분이 화재보험을 포함하고 있듯이, 과거에는 손해보험이 곧 화재보험이고 화재보험이 곧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 상징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재보험의 위상은 회사 내에서 점점 축소되어 경영진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강호순처럼 모든 강력범죄의 시초는 방화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조그만 방화가 방화 자체의 **중독성**과 화재원인조사의 부실함 등으로 인해 나중에는 **증거 인멸** 또는 보험금을 노리고 타인을 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변질된 것이다.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과거 화재보험 관련 조사의 부실로 강호순을 단순방화범에서 연쇄살인범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또 다른 강호순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소방당국을 위시한 정부 조사기관과 화재보험 조사기관들이 지금보다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화재보험 사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